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(공시송달) 공고 제 2023-52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“폐문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10. 3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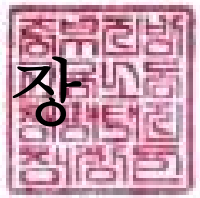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김○식	87.05.25.	경기도 안성시 서당길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(중단)	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일자에 미방문 및 출석통지 3회 불응 (연락두절)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 : 2023. 10. 31. ~ 2023. 11. 14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한인정(☎ 031-686-17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